

전산설비 국외 위탁
승인 심사 매뉴얼

2013. 12.

은행감독국
(국제분쟁업무반)

개정 연혁

개정 일자	개정 주요내용
'13. 12.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내부통제목적 매뉴얼 제정

I. 전산설비 국외위탁 승인 심사업무

1. 업무 개요

가. 감독 목적

□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업무(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다른 사람(고용관계 없는 자)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

* 다른 회사(용역회사 등) 소속 근로자를 금융회사가 파견받아 금융회사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업무위탁이 아님

○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위탁에 따른 위탁자수탁자·금융소비자간의 법률관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상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

- 민법상 위임(§680 ~ §692)·도급(§680 ~ §692)·사용자 책임(§756) 관련 규정 등

- 상법상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 관련 규정* 등

* 업무위탁의 내용이 금융상품의 판매인 경우 수탁자는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등의 지위에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업은 인·허가 사항*이고, 감독당국의 감독·검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상법 등 일반 규정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

* 금융업 인·허가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춘 법인에게 해당 금융업 영위를 허용한 것이므로, 사인간 계약인 위탁계약을 통해 제3자가 인·허가대상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곤란

○ 특히, 업무위탁에 따른 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 등을 감안시 업무위탁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 필요

〈참고〉 업무위탁에 따른 민법상 법률관계

1. 위임계약

① 개념

-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80)

* 代理와의 관계 : 위임사무가 법률행위(또는 준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제3자와 관계를 갖게 되면 위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의 수여를 수반

② 수임인의 권리와 의무

-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 선관의무, 보고의무,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등을 지고
-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보수청구권, 비용선급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을 갖게 됨

③ 복위임

- 위임은 당사자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수임인은 본인 스스로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위임인이 승낙을 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민법 §682①)

2. 도급계약

① 개념

-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64)
- 도급은 일(유·무형 모두 포함)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의 ‘처리’에 목적을 두는 위임과 구별
 - *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며, 원칙적으로 보수는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못함

② 수급인의 권리와 의무

- 수급인은 일의 완성 및 인도 의무를 지고, 하자보수, 손해배상, 계약 해제의 책임을 짐
- 도급인은 보수지급의무 등을 지게 됨

③ 하도급(하청)

- 수급인은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완성시키기만 하면 되므로
 - 수급인은 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하도급이 금지되지 않는 한 도급 받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음 (하도급 가능)

3. 사용자 책임

① 개념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됨(민법 §756)

② 요건

- 어느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
 - * 사무 : 영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으며, 계속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도 아님(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으면 되고, 그 원인관계의 유무와 유효여부를 묻지 않음)
 - ** 피용자 : 사용자가 선임하고 또한 지휘·감독하는 관계(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 손해를 주었을 것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것
-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③ 배상책임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피용자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사용자는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짐
-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 행사 가능(민법 §756③)

나. 전산설비 국외 위탁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감독규정”)은 전산설비 국외 위탁시 금융위 승인 필요

* 감독규정 §6① :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보처리의 위탁과 관련한 설비를 국외의 본점·지점 또는 계열사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 전산설비 국외 위탁 관련 규제현황

1. 종전

□ 업무위탁규정, 자본시장법령 등 업무위탁과 관련한 법령에서 전산설비(금융거래정보 포함)의 위탁가능 여부를 규율하고 있지 않음

○ 금감원의 「금융회사 업무 위·수탁 해설서」에서 원칙적으로 전산설비 위탁을 금지하고, 동일 그룹내 전산 전담 자회사 등에 대해서만 위탁이 가능하다고 제시

<금감원 해설서 내용>

- 전산시설은 금융회사의 핵심적 기능중 일부를 담당(인허가 요건상 물적시설)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위탁 불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위탁이 가능
 - i) **동일 그룹내 전산 전담 자회사에 위탁 가능**
 - ii) 국내 금융회사 해외영업을 위한 보조 전산시설 해외 위탁 허용
 - iii)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의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 모금융회사의 일부 전산시설 이용 가능
 - iv)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2. 현행

- '13.6.25. 감독규정 시행으로 전산설비(금융거래정보 포함)의 국외위탁이 원칙적으로 가능해 짐
 - 이는 IT 기술 발달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관련 전산설비가 상당부분 위탁 운영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 한-EU,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일상적인 자료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해외 이전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 협정문상 한-EU FTA 발효('11.7.1) 후 2년내('13.6.30), 한-미 FTA도 발효('12.3.15) 후 2년내('14.3.14) 금융회사의 정보이전을 허용하여야 함

<한미 FTA협정 중 정보이전 관련>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 본점 및 금융정보처리 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게 허용하되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감독체계 정비를 위하여 유예기간(한미 FTA 발효 후 2년 이내)을 두고 개방
- 다만 다음의 건전성 조치들은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취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식·절차 등은 유예기간 중 미국제도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마련
 - i) 개인정보보호
 - ii)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 금지
 - iii)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해외수탁기관에 대한 검사권 수행가능
 - VI) 적절한 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2. 전산설비 국외 위탁이 제한되는 경우

-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을 제한할 수 있음

제6조(전산설비의 국외위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설비의 국외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상 필요한 금융거래 관련 원장
2.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설비. 다만, 금융이용자군 및 취급상품의 특성상 국경간 이동서비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3. 국내 외부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해외에 두기 부적합한 전산설비
4. 해외에 두는 경우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보안성 및 재해 복구 시간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전산설비
5. 상기 각 호의 전산설비를 지원하는 데이터 네트워킹 기반 시설 및 전산 보안설비

-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상 필요한 금융거래 원장 설비”의 범위 및 사례

- “원장”이란 거래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장부

- 원장 관련 설비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며 해당 정보에 대해 업무적·법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설비를 의미

- * 전자금융거래시 법적으로 지급 효력발생(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또는 출금 동의 철회 가능(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시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보가 저장된 설비

전산설비 국외 위탁 승인 심사 매뉴얼

- 금융거래 원장 설비는 금융거래 정보가 저장된 원장 설비를 의미
 - 인사, 교육, 성과관리, 예산, 법률·세무관리, 경영지원·총무업무 등 금융거래와 무관한 업무와 관련된 원장 설비는 국외위탁 가능
 -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상 금융거래 원장 설비의 국내 소재가 필요치 않은 경우 국외 위탁 가능
 - 위탁회사가 “(가칭)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관련 리스크 관리지침*”을 준수할 의사 및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 판단
 - * 전산설비 위탁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위탁회사의 활동(①리스크 평가, ②수탁사 선정, ③계약 검토, ④수탁자 상시모니터링, ⑤업무연속성 확보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지침
-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 처리 설비”의 사례
- * 다만, 금융이용자군 및 취급상품의 특성상 국경간 이동서비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설비 제외
- (은행) 자동화기기/영업점시스템, 콜센터 및 통합인증시스템 등
 - (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웹트레이딩시스템(WTS) 등
 - (보험) 보험처리종합시스템, 보험영업정보시스템, 방키슈랑스시스템, 콜센터시스템 등
 - (카드) 신용카드 발급 및 승인시스템 등
 - (전자금융) 거래승인·승인중계·발급승인 시스템 등

전산설비 국외 위탁 승인 심사 매뉴얼

□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국내 외부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해외에 두기 부적합한 전산설비”의 사례

○ 한은공동망(BOK-Wire+), 어음교환시스템, 지로공동망, 은행공동망*, 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 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과 직접 연결된 전산설비

* 현금인출기(CD)공동망 : 소액 인출·입금·송금

타행환공동망 : 1억원 이하의 타행앞 송금

지방은행공동망 : 지방은행 거래고객 전용 예금·대출거래망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 급여, 보험료 등 소액대량 자금이체

직불카드공동망 : 직불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대금결제

전자화폐(K-CASH)공동망 : 은행 공동발행 전자화폐 사용대금 결제

전자금융공동망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10억원 이하의 송금

□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4호의 “국외 위탁시 관련 법령 준수 불가 전산설비”의 사례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 재해복구센터가 국외소재시 법상 재해복구 목표시간 내 복구가 어려운 경우 등

* 전자금융거래법 §21 및 동 감독규정§23⑧에 복구목표시간 명시

□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5호의 “상기 전산설비*를 지원하는 데이터 네트워킹 기반 시설 및 IT 보안설비”의 사례

* 금융위원회가 국외위탁을 제한하는 전산설비

○ 네트워크 장비 : 허브, 브리지, 스위치, 라우터 등

○ 보안장비 : 방화벽(Firewall), 침입방지시스템(IPS), 침입탐지시스템(IDS) 등

Ⅱ. 전산설비 국외 위탁 승인 심사기준

1. 적극적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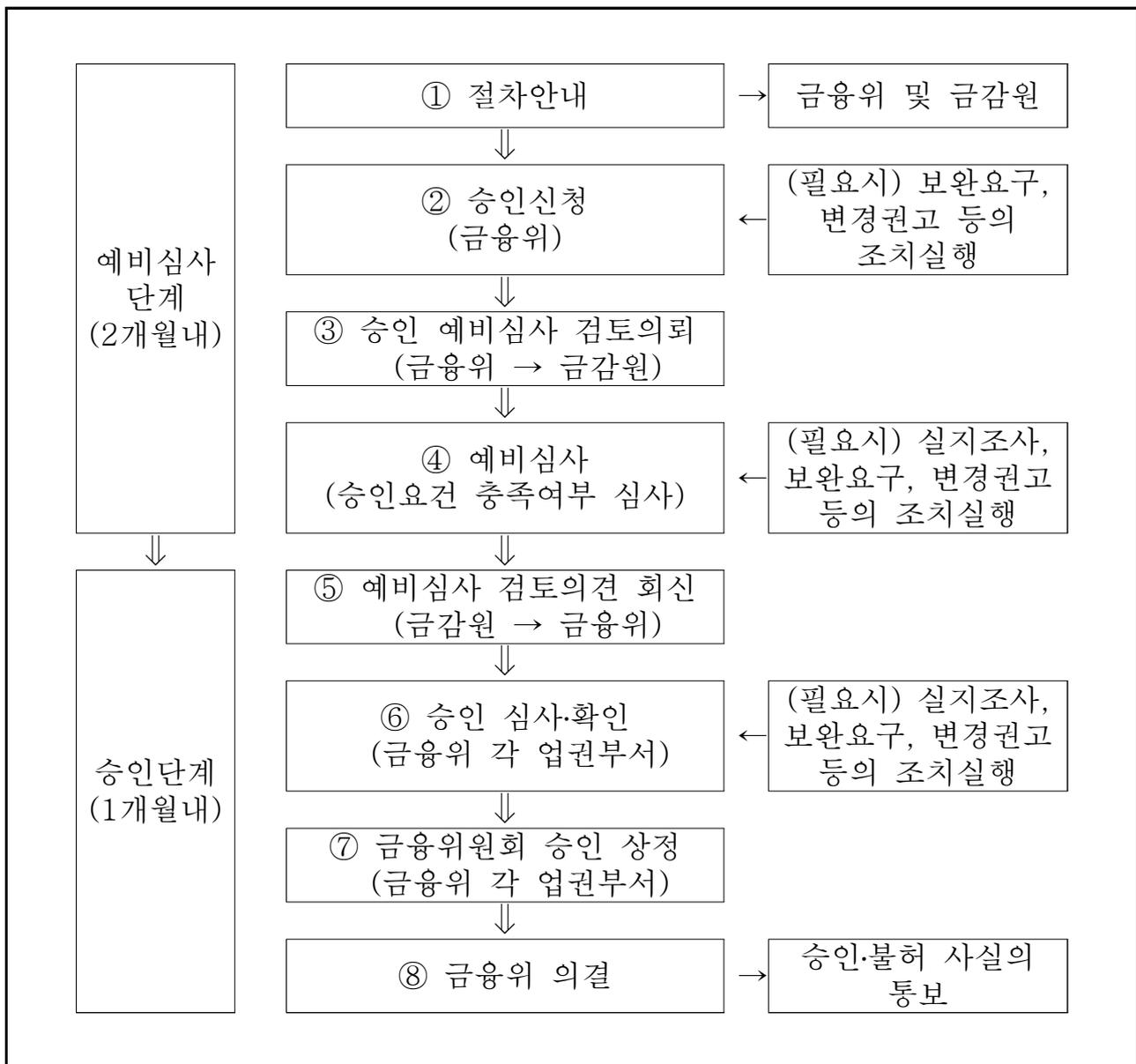
- 가. 국외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본점·지점·계열사로 한정
- 나. 관련 기능의 수행에 충분한 성능의 전산설비 및 관련시설 확보
- 다.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전산설비 보호대책 구비
- 라. 전산사고 발생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및 합리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 구비
- 마. 전산설비 운영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
- 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성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보안성 심의 통과

2. 소극적 요건

- 가.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금융감독 목적상 국내 소재가 필요한* 금융거래 관련 원장설비가 아닐 것
 - * 위탁회사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관련 리스크 관리지침' 준수 의사 및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
- 나.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설비가 아닐 것
- 다. 국내 외부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해외에 두기 부적합한 전산설비가 아닐 것
- 라. 해외에 두는 경우 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보안성 및 재해 복구 시간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전산설비가 아닐 것
- 마. 상기 전산설비를 지원하는 데이터 네트워킹 기반 시설 및 전산 보안 설비가 아닐 것

Ⅲ. 전산설비 국외 위탁 승인 심사절차

1. 사전 금융위 신청 : 전산설비 국외위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사전에 금융위에 전산설비 위탁 신청
2. 금감원 요건 검토 후 금융위 상정 : 금감원은 승인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 각 업권부서에서 금융위 상정
3. 금융위 의결 후 금융회사에 결과 통보



IV. 전산설비 국외 위탁 승인신청시 제출받을 서류

1. 승인신청서(참고)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보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위수탁 보고” 양식을 준용

- 동 서식에서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대방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 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등)”을 같이 제출

2. 감독규정 제7조의 정보처리 위탁 사전보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7조(보고) ①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안) 사본
-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탁 운영기준’
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감독규정 제6조에 따라 전산설비 국외위탁시 요건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6조 제2항 각 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6조 제3항 각 호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전산설비의 국외위탁)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설비 위탁 신청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관련 기능의 수행에 충분한 성능의 전산설비 및 관련시설 확보
2.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전산설비 보호대책 구비
3. 전산사고 발생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및 합리적인 이용자 피해구제절차 구비 여부
4. 전산설비 운영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
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성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통과 여부

<표1>

전산설비 국외 위탁 승인 요건 심사

요 건(규정 §6)	심사 내용	비고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국외 본·지점 또는 계열사일 것		
② 감독규정상 국외위탁 제한 전산설비가 아닐 것		
③ 관련 기능의 수행에 충분한 성능의 전산설비 및 관련시설을 확보할 것		
④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전산설비 보호대책을 구비할 것		
⑤ 전산사고 발생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및 합리적인 이용자 피해구제절차를 구비할 것		
⑥ 전산설비 운영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 가능성을 구비할 것		
⑦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성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통과할 것		

참고	전산설비 국외 위탁 승인 신청 서식
-----------	----------------------------

작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전산설비의 국외 위탁 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해당 국장

제 목 전산설비 국외위탁의 승인 신청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의 위탁과 관련한 설비의 국외위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위탁계약건명	
계약상대방 (재위탁 예정시 재위탁 계약상대방 병기)	
계약기간	
계약내용	

※ 첨부서류

1. 계약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 계약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 1부
2. 위탁계약서(안) 사본 1부
3.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탁 운영기준’ 1부
4.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1부
5.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부
6.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1부

전산설비 국외 위탁 승인 심사 매뉴얼

7.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9. 관련 기능의 수행에 충분한 성능의 전산설비 및 관련시설 확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0.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전산설비 보호대책 1부
11. 전산사고 발생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1부
12. 이용자 피해구제절차 1부
1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성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보안성 심의 결과 1부

신 청 인 (인)

대 리 인 (인)